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제정 2009·6·5 조례 제 771호
일부개정 2013·8·7 조례 제 992호
일부개정 2016·7·5 조례 제1249호
일부개정 2017·9·29 조례 제1334호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3·8·14 조례 제1968호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2023·9·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나아가 이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7>

제2장 대관

제2조(시설구분) 이천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의 시설 및 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8·7>

1. 기본시설 : 대공연장, 소공연장, 연습실, 전시장, 분장실
2. 부대시설 및 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및 냉·난방시설, 그 밖에 시설 등

제3조(대관범위 등) ① 아트홀에서 대관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제2조에서 정한 시설과 같다. 다만, 정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대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7>

② 대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대관 : 상반기(1월~6월), 하반기(7월~12월)
2. 수시대관 : 정기대관 공백일

제4조(사용허가) ① 아트홀을 공연·전시·행사(이하 “공연 등”이라 한다)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3·8·7>

② 사용허가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및 신설 2013·8·7>

1. 관계 법령 및 아트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2. 공연 등의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3.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일 때
4.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연 등으로 판단할 때
5. 사용자가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6. 사용허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대관을 취소하여 아트홀 운영에 불이익을 끼친 사실이 있을 때
7. 그 밖에 승인절차 위배 등으로 운영의 문제점을 초래할 때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8·7>

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처분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정한 기일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5.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8·7>

제7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① 아트홀의 사용시간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 납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① 시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주최의 경우 수익금 분할방식 등으로 기본대관료 이상의 대관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협약의와 계약에 따라 대관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 등을 제외한 관람료 수입금 총액이 제7조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3·8·7〉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정산·납부해야 하며 사용료를 체납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8·7, 2016·7·5〉

③ 시장은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3·8·7〉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제7조제2항에 따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3·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 부터 10일 전까지 사용취소를 서면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기본시설 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개정 2013·8·7〉

제10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등을 설치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설비 등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 등은 사용중지 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파손 등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설비를 인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3·8·7〉

제11조(사용자의 안전관리) ① 사용자가 공연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

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시장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사용자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해야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8·7>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대하여 사용시설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3·8·7>

제12조(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아트홀 사용에 있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잃어버렸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③ 아트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주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7>

④ 아트홀 사용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개관 및 휴관) 아트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아트홀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날
2. 매주 월요일

제14조(관람권의 발행) ① 사용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공연 등에 대하여 관람자로 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장의 검인을 받아 입장권 또는 관람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관람권을 전산발매 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8·7>

② 관람권은 좌석 수 등 아트홀의 수용능력 범위에서 발행하여야 하며, 수용능력 이상

으로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8·7>

③ 국가, 경기도, 이천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연 등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관람권의 매표·매수관리) ①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를 하고 관람권 확인은 아트홀에서 전담하며, 사용자는 예매 및 매표를 아트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8·7>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따른 매표 수수료는 관람권 표시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표 수수료는 관람권의 매표금액에서 징수하고 정산처리 한다. <개정 2013·8·7>

③ 관람권의 남은 표와 받은 표의 절취한 관람권은 아트홀 사용이 끝난 직후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공무원이 확인하고 폐기한다. <개정 2013·8·7>

제16조(관람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장 또는 관람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8·7>

1. 타인의 안전 및 공연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
3. 만취자 또는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의 시장이 안전유지 및 공연 등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3장 자체기획공연 등

제17조(관람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자체기획(타인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연 등을 할 경우 관람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감면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8·7>

② 유료관람권 판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판매대금의 100분의 10범위에서 판매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7>

③ 징수한 관람료는 이천시의 수입으로 하며, 관람료는 각 공연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8·7>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람자에 대해서는 공연기획사와 상호 협의를 통하여 관람료를 할인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3·8·7, 2017·9·29, 2023·8·14, 2023·9·27>

1. 아트홀 가족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
2. 단체관람자
3. 이천장학카드 소지자
4.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5. 관계 법령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 받는 자

5의2. 이천시 명예시민

6.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관람자가 제4항에 따른 2개 이상의 할인이 해당한 경우에는 최고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3·8·7>

제18조(회원제 운영) ① 시장은 문화예술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가입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7>

② 시장은 유료회원에게 자체 기획공연 시 30퍼센트 이내에서 차등하여 할인혜택을 줄 수 있다. <신설 2013·8·7>

제4장 문화강좌

제19조(문화강좌 운영 등) ① 시장은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문화예술강좌(이하 “문화강좌”라 한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강좌 등을 위하여 강사를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강

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7>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의 위촉기간은 해당 강좌 기간으로 한다. 다만, 강좌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8·7>

제20조(수강료 등) ① 문화강좌의 수강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8·7>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수강료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한다. <개정 2013·8·7, 2016·7·5>

1. 아트홀 사정에 따라 강좌가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 전액 환급

2.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환급

가. 수강시작일 전 : 전액환급

나. 총 수강시간의 3분의 1 경과 전 : 수강료의 3분의 2 해당액 환급

다. 총 수강시간의 2분의 1 경과 전 : 수강료의 2분의 1 해당액 환급

라. 총 수강시간의 2분의 1 경과 이후 : 미환급

3. 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4. 삭제 <2016·7·5>

③ 수강 및 환급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7·5>

제5장 운영위원회

제21조(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아트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아트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8·7>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 또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3·8·7>

1. 아트홀의 운영 및 관리의 중요한 사항
2. 그 밖에 아트홀 운영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시장은 대관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3·8·7>

제2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3·8·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3·8·7>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5급 이상의 소속 공무원
3. 문화예술계 전문 인사
4. 아트홀 운영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5. 회원으로 등록 된 사람
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8·7>

제2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3·8·7>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할 때
3.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3·8·7]

제24조(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소집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횟수 등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7>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8·7>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트홀 담당팀장이 된다.

제25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7>

제6장 보칙

제26조(공연 자원봉사자 운영) ① 시장은 원활한 공연운동을 위하여 공연 모니터, 공연 안내도우미 등의 공연자원봉사자를 선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7>

② 공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8·7>

[제목개정 2013·8·7]

제27조(위탁관리)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트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7·5>

제2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하며, 재산관리사항에 대해서는 「이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8·7>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8·7 조례 제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5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1334호,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천시 명예시민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명예시민은 이 조례에 따라 수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이천시 명예시민

부칙 <2023·8·14 조례 제1968호,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이천시 이천아트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관람료의 징수 등)제4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제시하는 사람

부칙 <2023·9·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3·8·7>

이천시 이천아트홀 1회 사용시간(제7조 관련)

구 분	시간(공연장)	비 고
오 전	09:00시 ~ 12:00시	<p style="text-align: center;"><u>전시장 1일 사용시간</u></p> <p>○ 평 일 : 09:00~20:00 ○ 토·일·공휴일 : 09:00~18:00</p>
오 후	13:00시 ~ 17:00시	
야 간	18:00시 ~ 22:00시	
철 야	22:00시 ~ 다음날 07:00시	

[별표 2] <개정 2016·7·5>

이천시 이천아트홀 사용료(제7조 관련)

1. 기본시설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단위 : 원)

시설명	구분	단위	기본대관료		
			순수예술	뮤지컬	대중공연/행사
대공연장 (1,200석)	공연대관	1일	400,000	600,000	1,000,000
	준비/철수 대관	오전	100,000	200,000	300,000
		오후	150,000	250,000	350,000
		야간	200,000	300,000	400,000
		철야	300,000	400,000	500,000
소공연장 (450석)	공연대관	1일	200,000	300,000	500,000
	준비/철수 대관	오전	50,000	100,000	150,000
		오후	100,000	150,000	200,000
		야간	150,000	200,000	250,000
		철야	250,000	300,000	350,000
연습실 (합창, 무용, 교향악, 연극)	오전	25,000			
	오후	30,000			
	야간	40,000			
문화센터 강의실	오전	10,000			
	오후	15,000			
	야간	20,000			
전시장	전체(674㎡)	150,000			
	분할시(337㎡)	80,000			
	분할시(168㎡)	40,000			

- 공연대관 1일이라 함은 09:00~22:00까지를 말한다.
- 순수예술은 클래식, 연극, 무용, 국악, 오페라 등을 말한다.
- 시연회 및 공개리허설은 공연대관료에 준한다.
- 준비대관은 무대설치, 연습, 리허설을 위한 대관을 말한다.
- 철수대관은 공연종료 후 사용 전 상태로 전환을 의미하며, 공연종료 후 철수작업을 1시간 이내로 완료할 경우 별도 대관료는 없음.
- 철야작업은 22:00부터 익일 07:00까지 매 3시간 단위로 한다.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의 사용료는 기본대관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 냉방비, 난방비는 1시간당 연료비(전기로 포함) 시가의 10퍼센트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 ※ 사용자 의무가동시간 : 3시간(예열시간 포함)
 - 냉방 7월~9월까지, 난방 12월~3월까지 의무신청으로 하되 기온 급변시 시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부대설비사용료는 별도.
- 기본대관료에 포함되는 사항
 - 해당 공연장의 무대 및 객석, 분장실
 - 기본기술스텝 : 조명, 음향, 기계 각 1명 지원
 - 수표 및 객석 안내원
 - 출연자 휴게실 등 공통시설 및 공간
 - 기타 사용료를 받지 않는 부대시설

2. 부대시설 및 설비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명		구 분	단 위	기 본 사용료	비 고
피아노	대공연장	연 주 용	1회	60,000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피아노 조율은 지정된 조율사가 하여야 하며 조율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피치 변경시 사용자는 공연 후 원상복구 한다. ○ 연주용 피아노의 조율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덧마루(준비부터 철수까지 1회) - 설치, 전환, 해체 사용자 부담 ○ 덧마루 작업시 인건비는 사용자 부담 ○ 무대조명시설 사용에 있어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연습 및 무대장치의 작업용 조명 사용료는 기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대중공연시 발전차 의무 사용 ○ 덧마루 접착테이프나 포그머신액, 드라이아이스, 광목, 기타 무대시설재료비 등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녹음테이프 및 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 연습공연도 공연에 포함
		연 습 용	1회	20,000	
	소공연장	연 주 용	1회	40,000	
무대	오 케 스 트 라 비 트		1회	50,000	
	슬 라 이 디ング 무 대		1회	30,000	
	승 강 무 대		1회	50,000	
	합 창 연 주 단		1일	100,000	
	무 대 사 막		1일	100,000	
	댄싱플로어(무용매트)		1일	100,000	
	덧마루		1일기본(66㎡)	50,000	
			추가(16.5㎡)	10,000	
음향반사판	대공연장	1일	50,000		
	소공연장	1일	30,000		
음향시설	유선마이크(기본 3대)		1회	10,000	
	무 선 마 이 크		1회1채널	15,000	
	음 향 콘 솔		1회	50,000	
	영상자막기		1일	100,000	
	무선인터컴		1일1채널	10,000	
	빔프로젝트	15,000Ansi	1회	200,000	
		13,000Ansi	1회	150,000	
	녹음	MD, CD, 카세트	개	30,000	
비디오 녹화		개	40,000		
조명시설	기본조명	대공연장	1회	50,000	
		소공연장	1회	30,000	
	조명콘솔	대공연장	1일	50,000	
		소공연장	1일	30,000	
	F O L L O W P I N		1회	30,000	
	무 빙 라 이 트		1대	30,000	
	P A R 라 아 트		1대	2,000	
	웨 이 브 머 신		1대	10,000	
	포 그 머 신		1대	10,000	
블 랙 라 이 트		1대	10,000		
드라이아이스머신		1대	20,000		

※ 비고

- 조작인원 사용자 부담.
-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 등은 시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에 따로 정할 수 있다.

3. 기 타

(단위 : 원)

구 분 시설명	단위	기본사용료	비 고
방송, CF, 영화촬영 (비디오 포함)	1회	1,500,000	※ 철야작업시에는 기본 사용료의 150%를, 공연준비 및 철수시에는 50%로 한다.
의상 및 대·소도구	1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중 하나를 말한다.

[별표 3] <개정 2013·8·7>

이천아트홀 가족회원 가입비 및 할인율(제1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할인기준	가입비 (년간)	할인율	비 고
골드회원	1인 4매	70,000	최대 30%이내	※ 기간만료일은 도래시점(월)의 말일까지
블루회원	1인 4매	30,000	최대 20%이내	

[별표 4]

문화강좌수강료(제20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수 강 료	비 고
주1회(2시간)	1인 1월	15,000원 ~ 20,000원	
주1회(3시간)	1인 1월	20,000원 ~ 30,000원	
주2회(4시간)	1인 1월	20,000원 ~ 40,000원	

